

1. 개정이유

행정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21792호, 2026. 6. 9. 공포, 2026. 12. 10.시행)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,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 확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일정 직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 제24조(시설 폐쇄 등)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(안 제11조의4 및 별표 5 신설)

나.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에 ‘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’도 추가(안 제3조의3제1항제5호 신설)

다.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완화(안 별표4 개정)

- 1)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(7급)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, 각 직급 이상에서 필요한 경력 연수를 조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(8~9월)

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5(행정처분의 기준) 법 제2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
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

별표 4 제1호다목 중 “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”을 “3년 이상, 9급 이상
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”로 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행정처분의 기준(제11조의5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,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모두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사업의 폐지 또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- 마.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사업의 폐지 또는 시설 폐쇄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 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시설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시설의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시설이 없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24조 제1항제1호	경고	사업정지 1개월	사업의 폐지 또는 시설 폐쇄
나. 제22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24조 제1항제2호	경고	사업정지 1개월	사업의 폐지 또는 시설 폐쇄
다.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24조 제1항제3호	경고	사업정지 3개월	사업의 폐지 또는 시설 폐쇄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)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,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(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)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(無人)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.	제3조의3(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생략)
<u><신 설></u>	5. <u>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</u>
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<u>제11조의5(행정처분의 기준) 법 제2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</u>